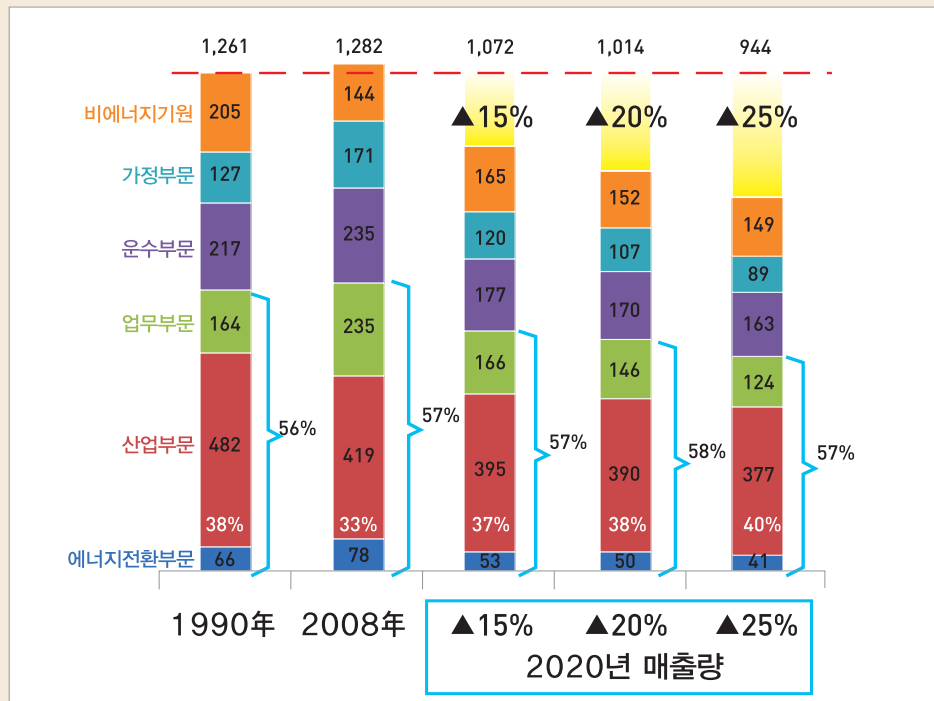


일본 CO₂ 배출량 거래제도

일본정부는 2010년 3월 지구온난화대책 기본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으나 이 법안에 포함되는 일본 국내 CO₂배출량 거래제도에 대한 논의는 연기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도쿄도 및 사이타마 현이 배출량 거래 제도를 도입중이다. 기본 법안에 포함된 탄소세도입, 재생가능에너지 전량고정가격매수제도 구축 같은 다른 시책은 2011년에 가결되었다. 이것들은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10%까지 증가시키는 일본의 에너지 계획 달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1년 발생한 대지진 이후 지진, 쓰나미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 이에 의한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본정부는 향후 일본의 에너지 계획 및 기후변동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본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추이

(단위: 백만 톤-CO₂)

출처: BCA 및 SGBC

국내배출량 거래제도

일본의 국내배출량 거래제도는 지구온난화대책의 주요 시책으로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세금이나 전량고정가격매입제도의 부담과 더불어 대량 배출자에게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요점이다.

이 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배출량의 범위는 대규모 배출원을 많이 포함한 산업부분, 업무부분, 에너지전환부분 등 현재 일본의 총 배출량 중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될 전망이다. 대규모의 배출원인 공장이나 빌딩 등을 대상으로 확실하게 배출량을 통제함으로써 일본의 총 배출량의 삭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 제도를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배출량의 한도에 관계한 의무준수 수단이다.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삭감하는 방법과 함께 제도대상자간의 배출량의 거래를 인정함으로써 총량 삭감을 기대함과 동시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삭감비용이 높다고 지적되는 일본 국내 환경에는 이미 저렴한 삭감대책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배출량 거래제도는 시장상황에서 저렴한 삭감 대책을 효율적으로 선택가능하게 한다.

배출시스템이 거래되고 CO₂배출에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여러 가지 배출삭감대책에도 명확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저렴한 대책이 선택되어짐과 동시에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았던 보다 저렴한 대책의 발굴할 가능성도 있다.

도쿄도 배출량거래제도 개요

대상기간	제1 계획기간 : 2010~2014년도(이후 기간은 5년씩)
대상자	「전년도의 연료, 열, 전기의 사용량이 원유환산 1500ki이상의 사업소」소유자(1,332사업소), 커버 비율은 도의 업무·산업부분의 배출량의 약 4할(도 배출량의 약2할)
총량삭감의무(할당방법) (별칙 있음)	「기준년도배출량(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이의 연속하는 3개년도)×「삭감 의무율」(▲6%, ▲8%)×「계획기간」
배출량거래	도의 인정을 받은 초과 삭감량(대상사업소가 의무량을 초과해 삭감한 양), 도내 중소 크레딧(도내중소규모사업소의 에너지절약 대책에 의한 삭감량), 도내 크레딧 등을 거래 가능

마지막으로 CO₂배출에 가격을 부여, 경제활동에 환경이라는 가치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에 구체적인 환경배려 행동이 수반되게 되어 통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동시에 온난화대책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된다.

도쿄도에서는 2000년부터 「지구온난화계획서제도」를 개시해 계획적인 대책의 실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전체의 약 80%는 표준레벨의 시도를 넘지 않아 제도 강화 방향성을 내걸고 삭감결과를 요구하는「총량삭감의무와 배출량거래제도」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2011년 4월부터 개시한 사이타마 현이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경영의 지나친 개입, 성장산업의 투자방해, 머니게임의 조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를 위해 국내배출량 거래제도에 관해서는 일본 산업에 대한 부담이나 이에 동반하는 고용에의 영향, 해외의 배출량 거래제도의 동향과 그 효과, 국내의 선행하는 주요 지구온난화대책(산업계의 자주적인 시도 등)의 운용 평가, 주요국가가 참가하는 공평하며 실효성 있는 국제적인 시스템 구축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